

KERI Brief

최저임금인상과 산업별, 연령별 영향

우광호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wookh@keri.org)

최 근 치러진 총선에서 여야할 것 없이 경쟁적으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주요 공약으로 내놨다. 이는 최저임금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공약 중 하나이다. 최저임금 인상이 마치 저숙련·취약계층 근로자의 생활수준 향상을 담보할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분석결과, 최저임금이 1만 원으로 인상될 경우 숙박음식점업에서는 81%의 근로자가 최저임금 대상으로 포함되어 해당 산업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는 부동산업 및 임대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순으로 많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증가율로 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중에서 현재 7.7%가 최저임금적용 대상자인데 반해 1만 원으로 인상 시 56.6%의 근로자가 해당되어 38.6%p 증가하는 등 산업 전반에 걸쳐 큰 변화가 예상된다. 또한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은 63%, 29세 이하는 57%의 근로자가 최저임금 대상이 됨에 따라 해당

연령의 고용이 감소하거나 상대적으로 숙련도가 높은 근로자로 대체될 수 있다. 저숙련·취약계층의 노동비용이 급격히 상승하면 고용이 감소하거나 숙련 근로자로 대체할 유인이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결국 피해는 저숙련·취약계층의 일자리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 최저임금은 단어 그대로 최저수준임금수준을 정하는 것이어야 한다. 포퓰리즘과 맞물려 전체근로자 생활수준의 잣대가 되어서는 최저임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기존의 대부분의 연구들도 최저임금의 완만한 상승을 가정한 연구들이다. 최저임금이 급격히 상승하면 최저임금을 받던 근로자의 임금상승이 아니라 일자리 상실 혹은 물가상승에 따른 부작용을 피하기는 어렵다. 최저임금을 완만하게 상승시키되 준수율을 높이는 것이 오히려 최저임금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산업 및 연령대별 노동시장 현황을 고려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

1. 서론

□ 최저임금제도는 전체 근로자가 아닌 '저숙련 근로자(low-skilled workers)'를 위해 제정

- 저숙련 근로자의 노동생산성은 일반 근로자에 비해 낮아, 최저임금의 과도한 상승 시 숙련도가 높은 근로자로 대체할 가능성 존재
- 최저임금이 전체 근로자의 중위임금과 같아지거나 높은 상황에서 저숙련 근로자의 고용은 분명히 감소할 것이고 이는 최저임금제도 목적달성 실패로 연결

□ 지난 총선에서 여야 모두 최저임금 인상을 주 공약으로 제시하여 그 어느 때보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폭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

- 노동계는 현재보다 약 66% 오른 1만 원 인상을, 경영계는 올해 시급인 6,030원을 주장 큰 대립을 빚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현재 산업별, 연령별 최저임금 대상 근로자 수와 비중을 분석하고,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인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가능해보고자 함

- 산업별, 연령별 최저임금 적용대상자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이 7,000원, 그리고 10,000원으로 인상되었을 경우 적용대상근로자 비중을 분석해 산업별, 연령별로 어떤 집단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것인지 살펴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임

□ 최저임금의 고용효과에 관한 논쟁의 시작은 Card & Krueger(1994)는 '최저임금 인상 시 오히려 고

용을 증가 시킨다'고 주장한 것이 시발점

- 최저임금이 인상된 뉴저지주와 인상되지 않은 펜실베이니아주 간 비교를 통해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분석결과 최저임금이 인상된 뉴저지주에서 오히려 고용이 증가

□ Neumark & Wascher(2000)은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 Card & Krueger(1994)의 연구를 정면으로 반박

- Neumark & Wascher는 Card & Krueger 연구의 자료수집방식에 오류가 있음을 지적
- 공식임금통계 자료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인상은 고용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

□ Card & Krueger(2000)에서 자신들의 분석이 틀리지 않았다고 재반박

- 노동통계청 자료를 이용해 재분석한 결과에서도 여전히 최저임금이 인상된 뉴저지주에서 고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

□ 많은 논쟁속에서도 공론화되고 있는 주장은 '최저임금의 인상폭은 완만하게(modest) 진행되어야 한다'와 '최저임금 상승은 노동시장 인력구성의 변화 유발'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

- 고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여전히 논쟁 중,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에서 주장하는 것은 최저임금의 '완만한 인상'을 가정한 결과

- 최저임금의 적정수준은 중위임금의 50% 수준이 적당하다는 연구결과도 존재
- 최저임금의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정확히 관측하기 어려운 반면, 최저임금의 지속적인 상승은 숙련근로자가 저숙련근로자 일자리를 대체하는 노동시장구성의 변화가 관측되고 있음
- 한국의 경우도 신규채용보다는 경력 혹은 숙련 근로자 채용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

2. 분석데이터 및 분석결과

□ 본 연구에서는 최저임금 변화에 따른 적용근로자 수 변화 및 산업별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5년 자료 사용

-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경제활동인구조사(통계청)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고용노동부) 두 자료를 이용, 최저임금 관련 통계치를 제공
- 경제활동인구조사기준 영향률¹⁾의 경우 2016년 18.2%인데 반해,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기준의 경우 8.7%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이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경우 지난 3개월간 평균 급여를 제시하고 있으며 근로시간의 경우도 총 근로시간으로 묻고 있어 나타나는 결과로 추정됨
- 반면,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자료는 정액급여와 소정근로시간 항목을 구분해 제시하여 보다 정확한 추산이 가능하다고 판단, 해당 자료를 이용해 추정
- 임금인상률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통상임금 기준 협약임금 인상률 실적치 5.3%를 적용하였으며, 과다 추정을 방지하기 위해 분석대상

에서 특수고용형태근로자와 재택/가내 근로자는 제외

- 따라서, 2015년 임금에 5.3% 인상률을 반영하여 2016년 최저임금적용대상 근로자 수를 산출하고, 거기에 추가로 5.3% 인상률을 반영해 2017년 최저임금적용대상 근로자 수를 산출한 결과를 통해 분석 실시

□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는 2016년 약 1,318천 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약 9.4%로 추정

-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치인 8.7%와 약 0.7%p 차이는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와 임금 항목 구분에서 기인²⁾

□ 최저임금이 7,000원으로 인상될 경우, 최저임금 대상근로자는 약 2,065천 명으로 약 747천 명 증가하며 전체 근로자 중 14.8%가 최저임금 적용근로자에 해당

□ 최저임금 10,000원으로 인상 시, 적용대상근로자는 6,593천 명 늘어난 5,911천 명이 되며 이는 전체 임금근로자 중 42%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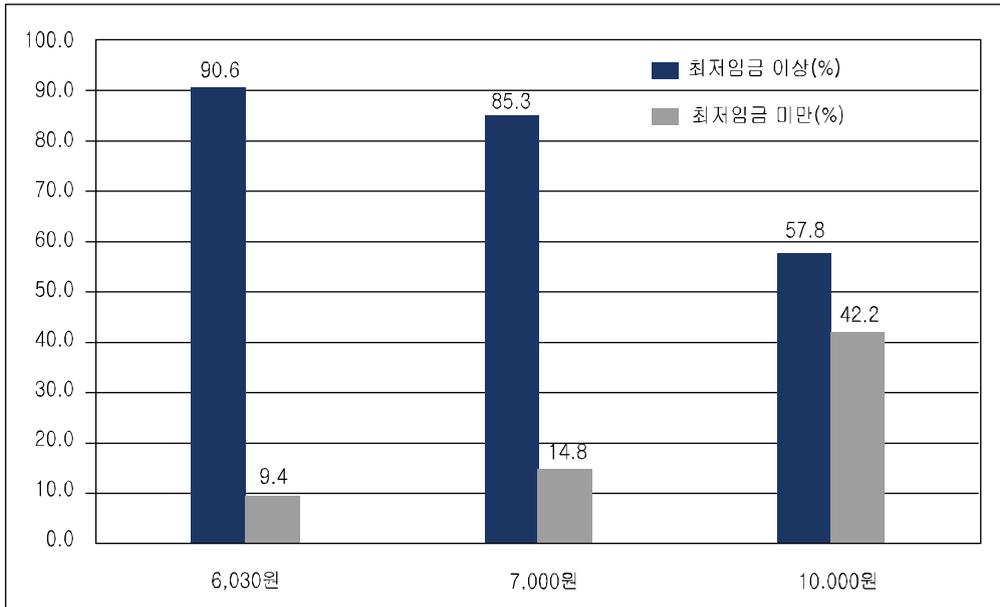
- 1) 영향률=대상 근로자 수 / 적용대상 임금근로자 수*100
- 2)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는 2014년 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자료이며,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공표자료에서는 정액급여(기본급+통상임금+기타수당)의 항목만을 제공하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용한 자료는 보다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통상임금(기본급+통상임금)항목 자료를 통해 추정한 수치이므로 본 연구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음. 본 연구에서도 보다 정확한 추정을 위해 정액급여 대비 통상임금 비중(약 95%)을 정액급여 항목에 반영하여 추정하였음.

〈표 1〉 최저임금에 따른 적용근로자 수 및 비중

	현행(6,030원)		7,000원 적용 시		1만 원 적용 시	
	근로자 수(명)	%	근로자 수(명)	%	근로자 수(명)	%
최저임금 이상	12,681,047	90.6	11,933,921	85.3	8,087,998	57.8
최저임금 적용	1,317,921	9.4	2,065,047	14.8	5,910,970	42.2
전체	13,998,968	100.0	13,998,968	100.0	13,998,968	100.0

자료: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2015) 이용, 저자 추산

〔그림 1〕 최저임금 변화에 따른 대상근로자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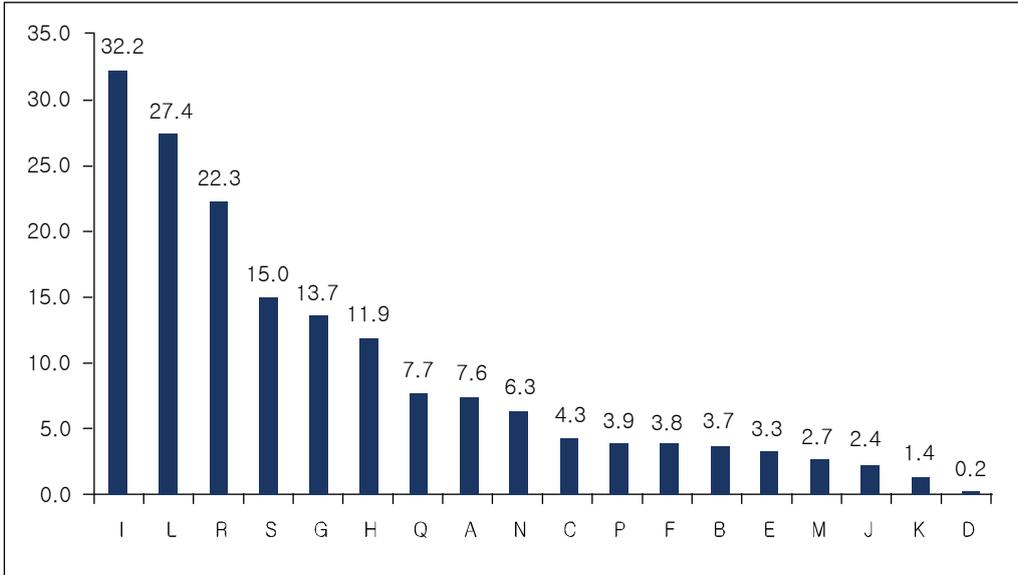


□ 산업별 최저임금 대상근로자³⁾의 경우, 숙박 및 음식 점업에서 32.2%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부동산업 및 임대업 27.4%,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2.3%,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 15.0% 순

- 최저임금 적용대상자가 많은 산업의 경우, 대부분 고령 혹은 청년층의 비중이 높은 산업

3) 산업별 근로자 수 및 전체 분석결과는 부록으로 첨부하였음

[그림 2] 산업별 최저임금 대상근로자 비중: 현행 6,030원



자료: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2015)을 이용 저자 추정

주: A. 농업·임업 및 어업, B. 광업, C. 제조업, D.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E.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F. 건설업, G. 도매 및 소매업, H. 운수업, I. 숙박 및 음식점업, J.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K. 금융 및 보험업,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M.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P. 교육서비스업,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R.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S.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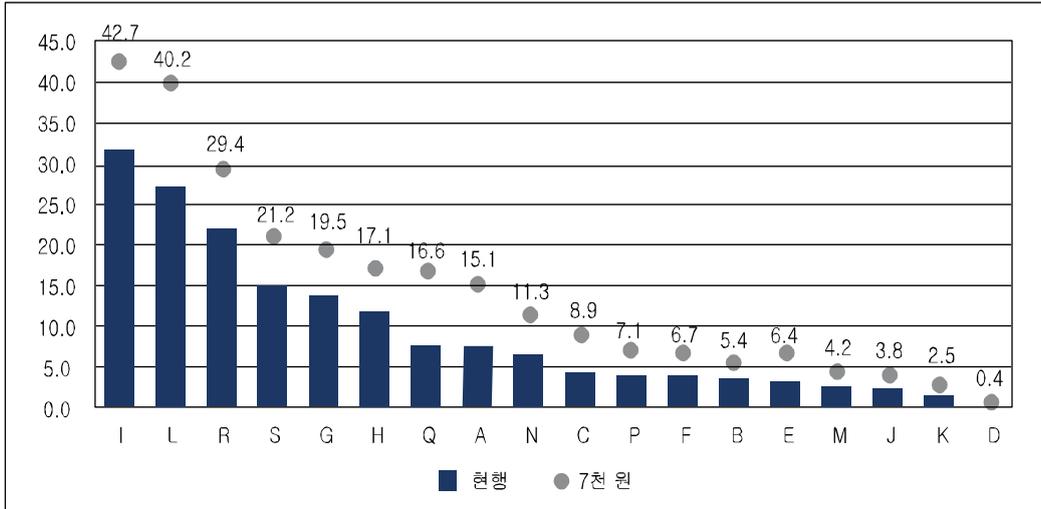
□ 최저임금이 7천 원으로 인상될 경우, 숙박 및 음식점업은 약 43% 근로자가 최저임금 대상이 되며, 부동산업 및 임대업 역시 40% 이상의 근로자가 최저임금 대상

- 최저임금이 7,000원으로 인상되면 위 두 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그 밖에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농업·임업 및 어업도 적용대상 근로자가 15%를 상회

□ 적용대상 근로자 비중 변화가 가장 큰 산업은 부동산업 및 임대업으로 최저임금 7천 원 적용 시 대상 근로자 12.8%p 증가

- 숙박 및 음식점업은 32.3%에서 42.7%로 10.5%p 증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도 7.7%에서 16.6%로 8.9%p 증가해 최저임금 상승이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
- 반면,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의 경우 7천 원으로 증가하더라도 대상근로자가 0.4% 밖에 되지 않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이 가장 적을 것으로 판단됨

[그림 3] 최저임금 인상 시 대상근로자 비중 변화: 7천 원 적용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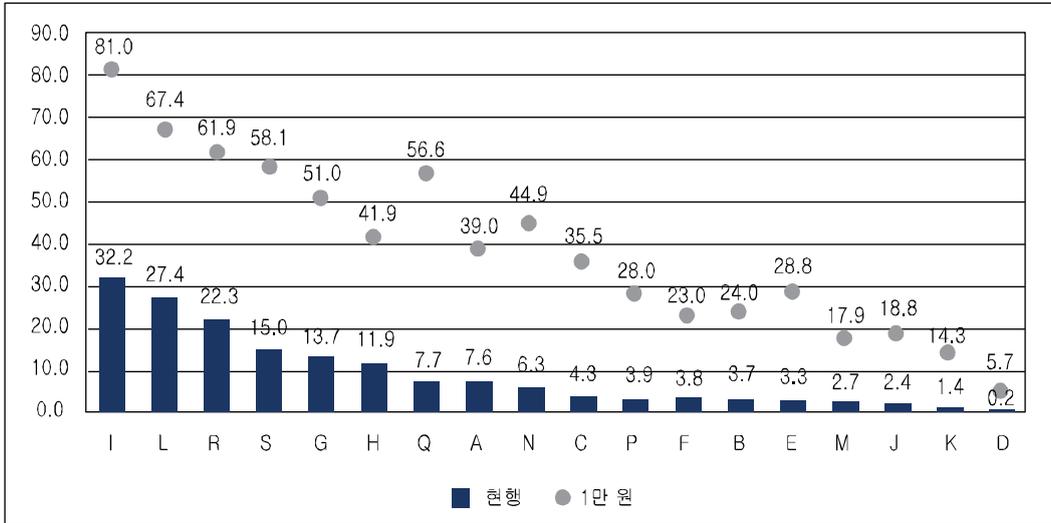
자료: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2015)을 이용 저자 추정

주: A. 농업·임업 및 어업, B. 광업, C. 제조업, D.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E.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F. 건설업, G. 도매 및 소매업, H. 운수업, I. 숙박 및 음식점업, J.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K. 금융 및 보험업,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M.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P. 교육서비스업,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R.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S.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최저임금이 1만 원으로 인상 시,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81% 근로자가 최저임금 대상에 포함되는 등 전 산업 고용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

- 숙박 및 음식점업을 포함한 부동산업 및 임대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도매 및 소매업 모두 최저임금이 1만 원으로 인상될 경우 해당 산업 근로자 절반 이상이 최저임금 대상 근로자에 포함
- 증가폭을 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현 7.7%에서 56.6%로 48.9%p 증가할 것으로 예상,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도 6.3%에서 44.9%로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그림 4] 최저임금 인상 시 대상근로자 비중 변화: 1만 원 적용 시



자료: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2015)을 이용 저자 추정

주: A. 농업임업 및 어업, B. 광업, C. 제조업, D.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E.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F. 건설업, G. 도매 및 소매업, H. 운수업, I. 숙박 및 음식점업, J.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K. 금융 및 보험업,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M.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P. 교육서비스업,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R.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S.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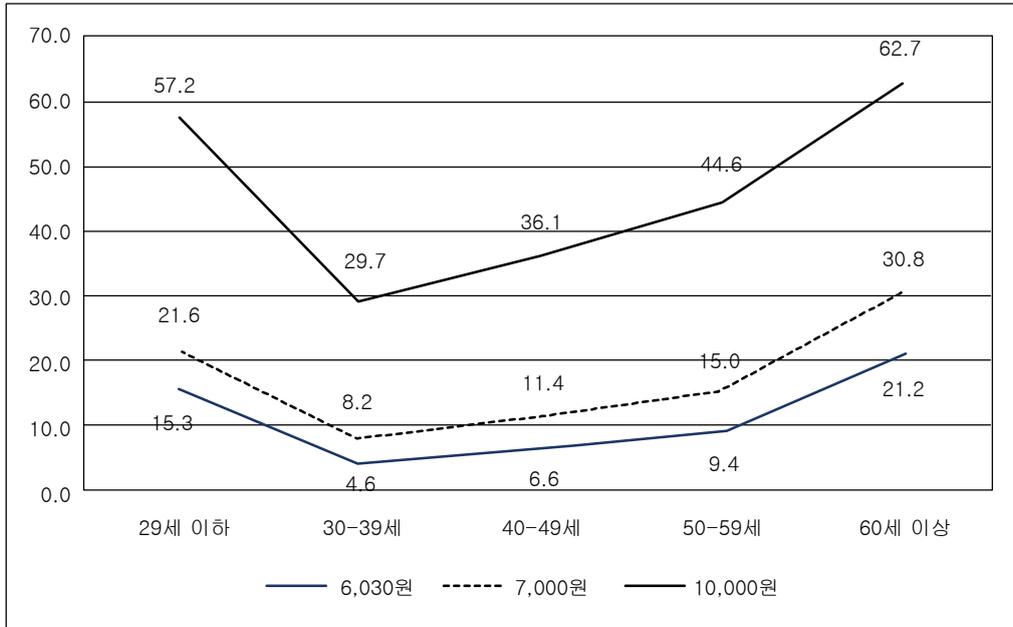
□ 근로자 연령별로는 최저임금이 1만 원으로 인상 시, 60세 이상은 63%, 29세 이하는 57%가 최저임금 대상자에 포함

- 최저임금에 큰 영향을 받는 연령대인 청년층과 고령층의 최저임금대상 비중을 분석한 결과,⁴⁾ 29세 이하 연령대에서 현재 15.3%에서 약 41.9%p 증가한 57.2%의 근로자가 최저임금 대상자에 포함
- 고령층의 경우도 현재 21.2%에서 41.5%p 증가한 62.7%의 근로자가 최저임금 대상자에 포함
- 최저임금을 받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인상이 해당 연령대의 고용에 악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최저임금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는 연령대에서 그 증가폭에 매우 가파르게 나타남을 확인

4) 연령대별 근로자 수 및 전체 분석결과는 부록으로 첨부하였음

[그림 5] 최저임금액에 따른 연령대별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비중 변화



자료: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2015)을 이용 저자 추정

3. 결론 및 시사점

□ **최저임금의 대폭 상승은 가계소득증가로 이어져 소비가 증가해 내수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주장이 정치적 포퓰리즘과 맞물려 큰 폭의 상승을 기대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

- 최저임금상승이 내수활성화로 이어진다는 정확한 분석결과는 전혀 제시된 적이 없음
- 최저임금은 저숙련 근로자의 최저생계 보장 및 소득증가가 그 목적임에도 모든 근로자를 위한 일인 것처럼 과대포장되고 있어 우려되는 상황

□ **급격한 상승은 저숙련 근로자가 사라지거나 해당 일자리가 숙련근로자로 대체되는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존재**

-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은 저숙련 근로자를 사용할 유인을 없애거나 비슷한 임금수준의 숙련근로자를 사용할 유인을 가중시켜 결국에는 본 목적을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
- 이병희·정진호(2008), 김대일(2012)의 국내 연구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은 저숙련 근로자의 고용을 위축하거나 신규고용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음

□ **분석결과에 따르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전체 근로자의 42%가 최저임금 대상에 포함되며, 산업별로는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연령별로는 29세 이하 및 60세 이상의 고용에 큰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추정**

- 최저임금이 1만 원으로 인상될 경우, 숙박 및 음식점업은 81%의 근로자가 최저임금대상자가 되며, 60세 이상은 63%, 29세 이하는 57%가 최저임금 대상자가 되는 등 노동시장 전체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

□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은 2016년 기준, 6,030원인데 이는 중위임금인 12,442원의 48.5% 수준**

- 해외 연구들 중 적정 최저임금수준을 중위임금의 50%로 주장했는데 이 주장을 근거로 보면 한국의 최저임금수준을 심각하게 낮은 수준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움

□ **경제발전에 맞춰 점차적인 상승은 모두가 공감하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저숙련 근로자 보호 및 경제발전 모두 어려울 수 있음을 인식**

□ **무리한 최저임금 상승은 최저임금 기능을 오히려 약화시킬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음**

- 최근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근로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은 시장에서 오히려 부작용을 유발할 가능성도 존재
- 최저임금이 부실기업을 정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됨

□ **최저임금은 단순히 한명의 근로자가 아닌 사업장 전체 근로자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을 충분히 고려한 결정이 절실**

- 최저임금으로 입사한 근로자에게 상여금, 성과급 등이 지급되는 사업장도 적지 않음

- 이러한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급격히 상승하면 올해 최저임금을 입사한 사람도 내년에 최저임금 기준으로 입사하게 될 근로자와 최소한 동일하게 맞춰 임금을 상승해줘야 하고 그렇게 되면 결국 전체 근로자 임금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고려해 결정되어야 함

- 단순히 시급을 받는 시간제 혹은 파트타임근로자만을 고려한 결정은 큰 부작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음

▣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보다는 임금결정은 시장에 맡겨 두고 장기적으로는 음소득제(negative income tax)등과 같은 제도 도입을 고려할 수 있음

- 현재도 약 9.4%의 근로자가 최저임금 미만임을 감안할 때 급격한 상승으로 최저임금과 취약계층 임금과의 괴리를 부추길 것이 아니라, 준수율 상승에 힘쓰는 것이 최저임금제도의 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이라 판단

- 근로인센티브의 왜곡을 최소화하면서 저숙련근로자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음소득제와 같은 제도 도입도 차후 고민해볼 필요

[참고문헌]

김대일(2012), 최저임금의 저임금 근로자의 신규 채용 억제 효과, 노동경제논집, 35(3), 29-50.

정진호 & 이병희(2008), 최저임금의 고용효과, 저소득 노동 시장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Card, D., & Krueger, A. B.(1994), Minimum wages and employment: a case study of the fast-food industry in New Jersey and Pennsylvania.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84(4), 772-793.

Card, D., & Krueger, A. B.(2000), Minimum wages and employment: a case study of the fast-food industry in New Jersey and Pennsylvania: reply.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90(5), 1397-1420.

Neumark, D., & Wascher, W.(2000), Minimum wages and employment: A case study of the fast-food industry in New Jersey and Pennsylvania: Comment.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90(5), 1362-1396.

〈부표 1〉 산업별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 및 비중: 현행(6,030원)

산업	최저임금 이상 (%)	최저임금 미만 (%)	전체 (%)
A. 농업, 임업 및 어업	29,823 (92.4)	2,443 (7.6)	32,266 (100.0)
B. 광업	13,577 (96.3)	518 (3.7)	14,095 (100.0)
C. 제조업	3,422,406 (95.7)	152,734 (4.3)	3,575,140 (100.0)
D.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59,720 (99.8)	127 (0.2)	59,847 (100.0)
E.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70,661 (96.7)	2,430 (3.3)	73,091 (100.0)
F. 건설업	980,964 (96.2)	39,113 (3.8)	1,020,077 (100.0)
G. 도매 및 소매업	1,529,661 (86.3)	243,004 (13.7)	1,772,665 (100.0)
H. 운수업	568,317 (88.1)	76,707 (11.9)	645,024 (100.0)
I. 숙박 및 음식점업	740,344 (67.8)	350,928 (32.2)	1,091,272 (100.0)
J.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455,440 (97.6)	11,149 (2.4)	466,589 (100.0)
K. 금융 및 보험업	440,870 (98.6)	6,185 (1.4)	447,055 (100.0)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268,512 (72.6)	101,503 (27.4)	370,015 (100.0)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825,833 (97.3)	22,677 (2.7)	848,510 (100.0)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873,494 (93.7)	59,118 (6.3)	932,612 (100.0)
P. 교육 서비스업	610,793 (96.1)	24,653 (3.9)	635,446 (100.0)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159,421 (92.3)	96,566 (7.7)	1,255,987 (100.0)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49,502 (77.7)	42,903 (22.3)	192,405 (100.0)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481,709 (85.0)	85,163 (15.0)	566,872 (100.0)
전체평균	12,681,047 (90.6)	1,317,921 (9.4)	13,998,968 (100.0)

〈부표 2〉 산업별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 및 비중: 7,000원 시행 가정

산업	최저임금 이상 (%)	최저임금 미만 (%)	전체 (%)
A. 농업, 임업 및 어업	27,382 (84.9)	4,884 (15.1)	32,266 (100.0)
B. 광업	13,337 (94.6)	758 (5.4)	14,095 (100.0)
C. 제조업	3,258,499 (91.1)	316,641 (8.9)	3,575,140 (100.0)
D.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59,595 (99.6)	252 (0.4)	59,847 (100.0)
E.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68,423 (93.6)	4,668 (6.4)	73,091 (100.0)
F. 건설업	951,923 (93.3)	68,154 (6.7)	1,020,077 (100.0)
G. 도매 및 소매업	1,427,253 (80.5)	345,412 (19.5)	1,772,665 (100.0)
H. 운수업	535,015 (82.9)	110,009 (17.1)	645,024 (100.0)
I. 숙박 및 음식점업	625,472 (57.3)	465,800 (42.7)	1,091,272 (100.0)
J.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448,811 (96.2)	17,778 (3.8)	466,589 (100.0)
K. 금융 및 보험업	435,814 (97.5)	11,241 (2.5)	447,055 (100.0)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221,306 (59.8)	148,709 (40.2)	370,015 (100.0)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813,179 (95.8)	35,331 (4.2)	848,510 (100.0)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827,681 (88.8)	104,931 (11.3)	932,612 (100.0)
P. 교육 서비스업	590,047 (92.9)	45,399 (7.1)	635,446 (100.0)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047,338 (83.4)	208,649 (16.6)	1,255,987 (100.0)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35,917 (70.6)	56,488 (29.4)	192,405 (100.0)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446,929 (78.8)	119,943 (21.2)	566,872 (100.0)
전체평균	11,933,921 (85.3)	2,065,047 (14.8)	13,998,968 (100.0)

〈부표 3〉 산업별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 및 비중: 10,000원 시행 가정

산업	최저임금 이상 (%)	최저임금 미만 (%)	전체 (%)
A. 농업, 임업 및 어업	19,679 (61.0)	12,587 (39.0)	32,266 (100.0)
B. 광업	10,710 (76.0)	3,385 (24.0)	14,095 (100.0)
C. 제조업	2,305,154 (64.5)	1,269,986 (35.5)	3,575,140 (100.0)
D.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56,443 (94.3)	3,404 (5.7)	59,847 (100.0)
E.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52,045 (71.2)	21,046 (28.8)	73,091 (100.0)
F. 건설업	785,665 (77.0)	234,412 (23.0)	1,020,077 (100.0)
G. 도매 및 소매업	869,250 (49.0)	903,415 (51.0)	1,772,665 (100.0)
H. 운수업	374,885 (58.1)	270,139 (41.9)	645,024 (100.0)
I. 숙박 및 음식점업	207,471 (19.0)	883,801 (81.0)	1,091,272 (100.0)
J.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378,781 (81.2)	87,808 (18.8)	466,589 (100.0)
K. 금융 및 보험업	383,052 (85.7)	64,003 (14.3)	447,055 (100.0)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120,671 (32.6)	249,344 (67.4)	370,015 (100.0)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696,777 (82.1)	151,733 (17.9)	848,510 (100.0)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513,629 (55.1)	418,983 (44.9)	932,612 (100.0)
P. 교육 서비스업	457,514 (72.0)	177,932 (28.0)	635,446 (100.0)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545,239 (43.4)	710,748 (56.6)	1,255,987 (100.0)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73,260 (38.1)	119,145 (61.9)	192,405 (100.0)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237,773 (41.9)	329,099 (58.1)	566,872 (100.0)
전체평균	8,087,998 (57.8)	5,910,970 (42.2)	13,998,968 (100.0)

〈부표 4〉 연령대별 최저임금 근로자 수 및 비중: 현행 6,030원

	29세 이하 (%)	30~39세 (%)	40~49세 (%)	50~59세 (%)	60세 이상 (%)	전체 (%)
최저임금 이상	2,259,736 (84.8)	3,530,843 (95.4)	3,516,363 (93.4)	2,483,055 (90.7)	891,050 (78.8)	12,681,047 (90.6)
최저임금 적용대상	406,661 (15.3)	169,052 (4.6)	246,992 (6.6)	256,079 (9.4)	239,137 (21.2)	1,317,921 (9.4)
전체	2,666,397 (100.0)	3,699,895 (100.0)	3,763,355 (100.0)	2,739,134 (100.0)	1,130,187 (100.0)	13,998,968 (100.0)

〈부표 5〉 연령대별 최저임금 근로자 수 및 비중: 7,000원 적용 시

	29세 이하 (%)	30~39세 (%)	40~49세 (%)	50~59세 (%)	60세 이상 (%)	전체 (%)
최저임금 이상	2,091,007 (78.4)	3,395,565 (91.8)	3,335,148 (88.6)	2,329,505 (85.1)	782,696 (69.3)	11,933,921 (85.3)
최저임금 적용대상	575,390 (21.6)	304,330 (8.2)	428,207 (11.4)	409,629 (15.0)	347,491 (30.8)	2,065,047 (14.8)
전체	2,666,397 (100.0)	3,699,895 (100.0)	3,763,355 (100.0)	2,739,134 (100.0)	1,130,187 (100.0)	13,998,968 (100.0)

〈부표 6〉 연령대별 최저임금 근로자 수 및 비중: 10,000원 적용 시

	29세 이하 (%)	30~39세 (%)	40~49세 (%)	50~59세 (%)	60세 이상 (%)	전체 (%)
최저임금 이상	1,142,419 (42.9)	2,600,616 (70.3)	2,405,684 (63.9)	1,517,502 (55.4)	421,777 (37.3)	8,087,998 (57.8)
최저임금 적용대상	1,523,978 (57.2)	1,099,279 (29.7)	1,357,671 (36.1)	1,221,632 (44.6)	708,410 (62.7)	5,910,970 (42.2)
전체	2,666,397 (100.0)	3,699,895 (100.0)	3,763,355 (100.0)	2,739,134 (100.0)	1,130,187 (100.0)	13,998,968 (100.0)

keri 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일 2016년 10월 14일 | 발행인 권태신 | 발행처 한국경제연구원 |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R&타워 45층 | 전화 3771-0080 | 팩스 786-0270-3